# 안전보건관 리의 개요

2018. 03. 00

# CONTENTS

- I 안전과 생산
- Ⅱ 안전보건관리 체제 및 운용
- Ⅲ 원소 분석과 화합물의 조성
- IV 예상 문제

#### • 용어 정의

- "산업재해"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·설비·원재료·가스·증기·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.
- "근로자"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 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.
- "사업주"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지를 말한다
- "근로자대표"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,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 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지를 말한다.
- "작업환경측정"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 주가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(試料)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- "안전·보건진단"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·평가를 말한다.

- 용어 정의
  - "중대 재해" 란 산업 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. (\*\*\*)
    - ❖ 사망자가 1 인 이상 발생한 재해
    - ❖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
    - ❖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 인 이상 발생한 재해
  - "안전관리" 란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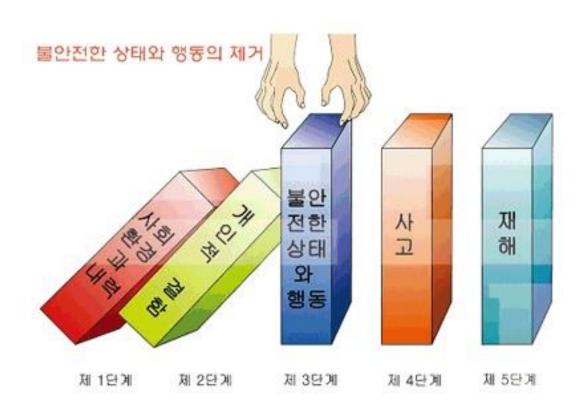
- 안전보건관리 이론
  - 하인리히 사고방지 5 단계(\*\*)

| 1단계:<br>안전조직          | <ul><li>안전목표 설정</li><li>안전조직 구성</li><li>조직을 통한 안전 활동 전개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안전관리자의 선임<br>• 안전활동 방침 및 계획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2단계 :<br>사실의 발견       | • 작업분석<br>• 사고조사   | <ul><li>점검</li><li>안전진단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단계 : 분석              | <ul> <li>사고원인 및 경향성 분석</li> <li>작업공정 분석</li> <li>사고기록 및 관계자료 분석</li> <li>인적·물적 환경 조건 분석</li> </ul> |   |
| 4단계 :<br>시정방법 선정      | <ul><li>기술적 개선</li><li>교육훈련 분석</li><li>배치 조정</li></ul>   | <ul><li>안전운동 전개</li><li>안전행정의 개선</li><li>규칙 및 수칙 등 제도의 개선</li></ul> |
| 5단계 : 시정책<br>적용(3E적용) | • 안전교육(Education)<br>• 안전독려(Enforcement)   | • 안전기술(Engineering)   |

- 안전보건관리 이론
  - 사고발생 이론
    - ❖하인리히( H . W. Heinrich) 사고발생 도미노 5단계

| 1단계 | 선천적 결함(사회, 환경, 유전적 결함)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단계 | 개인적 결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단계 | 불안전 행동(인적 결함), 불안전한 상태(물적 결함): 제거가능 |
| 4단계 | 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단계 | 재해(상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안전보건관리 이론
  - 사고발생 이론
    - ❖하인리히( H . W. Heinrich) 사고발생 도미노 5단계



- 안전보건관리 이론
  - 사고발생 이론
    - ❖ 버드(Frank. E. Bird)의 연쇄성 이론 5 단계

| 1단계 | 제어부족(관리 부재) |
|-----|-------------|
| 2단계 | 기본원인(기원)    |
| 3단계 | 직접원인(징후)    |
| 4단계 | 사고(접촉)      |
| 5단계 | 상해(손실)      |

- 안전보건관리 이론
  - 사고발생 이론
    - ❖ 아담스(Edward Adams) 연쇄성 이론 5 단계

| 1단계 | 관리구조   |
|-----|--------|
| 2단계 | 작전적 에러 |
| 3단계 | 전술적 에러 |
| 4단계 | 사고     |
| 5단계 | 상해     |

- 안전보건관리 이론
  - 사고의 본질적 특성
    - ❖ 사고의 시간성 : 사고는 공간적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발생한다.
    - ❖ 우연성 중의 법 칙 성 : 사고는 우연이 아닌 법칙에 따라 발생한다.
    - ❖ 필연성 중의 우연성 : 인간의 착오와 같이 우연적인 사고도 있다.
    - ❖ 사고의 재현 불가능성 : 사고 발생 후 재현은 불가능 하다.

- 안전보건관리 이론
  - 사고빈도법칙(\*\*)
    - ❖ 하인리히 1 : 29 : 300의 법칙 : 총 330건의 사고를 분석했을 때
      - ▶ 중상 또는 사망 : 1 건
      - ▶ 경상해 : 29 건
      - ▶ 무상해사고(물적 손실): 300 건이 발생함을 의미한다.
    - ❖ 버드의 1:10:30:600의 법칙:총 641건의 사고를 분석했을 때
      - ▶ 중상 또는 폐질 : 1 건
      - ▶ 경상해 : 10 건
      - ▶ 무상해사고(물적 손실): 30 건
      - ▶ 무상해, 무사고(위험 순간) : 600 건이 발생함을 의미한다.
    - ❖ 예1) 총 660건 사고분석 시 (2 : 58 : 600)
      - ➢ 중상 또는 사망 = 1 x 2 = 2건
      - ▶ 경상해 = 29 x 2 = 58건
      - ▶ 무상해 사고 = 300 X 2 = 600건

- 안전보건관리 이론
  - 사고빈도법칙(\*\*)
    - ❖ 예2) 총 990 건 사고분석시 (3:87:900)
      - ▶ 중상 또는 사망 = 1 x 3 = 3건
      - ▶ 경상해 = 29 X 3 = 87건
      - ▶ 무상해 사고 = 300 X 3 = 900건
    - ❖ 무상해, 무사고 (위험순간) = Near Accident
      - ➤ "Near Accident"(앗차사고)는 사고나기 직전의 순간으로 인적 물적 손실을 수반하지 않은 사고이다.

- 안전보건관리 이론
  - J. H Harvey(하비)의 3E(\*)
    - ❖ 안전 교육(Education)
    - ❖ 안전 기술(Engineering)
    - ❖ 안전 독려 (Enforcement)
      - ▶ 강제, 관리, 규제, 감독
  - **3**S (\*)
    - ❖ 단순화(Simplification)
    - ❖ 표준화(Standardization)
    - ❖ 전문화(Specification)
    - ❖ 총합화(Synthesization) → 4S

- 안전보건관리 이론
  - 안전관리 4-Cycle(P-D-C-A)
    - ❖ 계획 (Plan)
    - ❖ 실시 (Do)
    - ❖ 검토(Check)
    - ❖ 조치 (Action)
  - 인간에러 (휴먼 에러)의 배후요인(4M) (\*\*\*)
    - ❖ Man (인간) : 본인 외의 사람, 직장의 인간관계 등
    - ❖ Machine(기계) : 기계, 장치 등의 물적 요인
    - ❖ Media(매체): 작업정보, 작업방법 등
    - ❖ Management(관리): 작업관리, 법규준수, 단속, 점검 등

- 안전보건관리 이론
  - 페일세이프(Fail safe) (\*\*\*)
    - ❖ 인간 또는 기계의 실패가 있어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, 3 중 통제를 가함
    - ❖페일세이프(Fail safe)
      - ▶ 기계의 고장이 있어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, 3중 통제를 가함
    - ❖ 풀 프루프(Fool proof)
      - ▶ 인간의 실수가 있어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, 3중 통제를 가함

#### ❖페일세이프 (Fail-Safe) 의 구분(\*)

- ▶ Fail Passive : 부품의 고장 시 기계장치는 정지 상태로 옮겨간다
- ▶ Fail active : 부품이 고장나면 경보를 울리며 짧은 시간 운전이 가능하다.
- ➤ Fail operational : 부품의 고장이 있어도 다음 정기 점검까지 운전이 가능하다.

#### ❖페일세이프의 종류(\*)

- ▶ 다경로 하중구조
- ▶ 하중경감구조
- ▶ 교대구조
- > 중복구조

- 제조물 책임과 안전
  - 제조물 책임 (PL : Product Liability)의 개념
    - ❖제조물 책임이란 유통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고객이 사용자 또는 제 3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당해 제조물 이외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제조물 결함에 관한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.
  -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의 종류
    - ❖제조상의 결함: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, 가공 상의 주의 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, 가공됨 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.
    - ❖설계상의 결함: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 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.
    - ❖ 표시상의 결함 :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, 지시,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 였더라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.

- 제조물 책임과 안전
  - 제조물 책임법의(PL법) 3가지 기본법칙
    - ❖ 과실책임 : 주의의무 위반과 같이 소비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
    - ❖보증책임: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명시적, 묵시적 보증을 한 후에 제품의 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을 짐.
    - ❖ 엄격책임: 제조자가 자사제품이 더 이상 점검되어지지 않고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때 그 제품이 인체에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 제조자는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이 있음.

- 안전보건관리조직
  - 안전보건관리 조직이란 원활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으로 라인형, 스태프형, 라인-스태프형의 3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.
  - 라인형(Line) or 직계형(\*\*)
    - ❖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, 실시, 평가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의 모든 것을 생산조직을 통하여 행하는 관리 방식이다.
    - ❖ 생산과 안전을 동시에 지시하는 형태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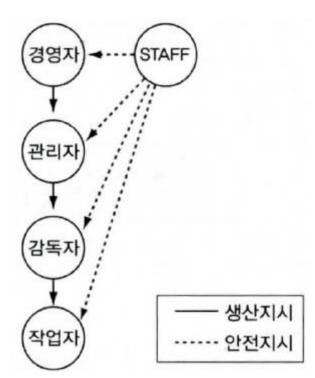
| 장점 | ① 안전에 대한 지시 및 전달이 신속ㆍ용이하다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| ② 명령계통이 간단ㆍ명료하다.          |
|    | ③ 참모식보다 경제적이다.            |
| 단점 | ① 안전에 관한 전문지식 부족 및 기술의 축적 |
|    | 이 미흡하다.                   |
|    | ② 안전정보 및 신기술 개발이 어렵다      |
|    | ③ 라인에 과중한 책임이 물린다.        |
| 비고 | ① 소규모(100인 미만) 사업장에 적용    |
|    | ② 모든 명령은 생산계통을 따라 이루어 진다. |



----- 생산지시 ----- 안전지시

- 안전보건관리조직
  - 스태프형(staff) or 참모형(\*\*)
    - ❖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스태프를 두고 안전 관리에 대한 계획, 조사, 검토 등을 행하는 관리방식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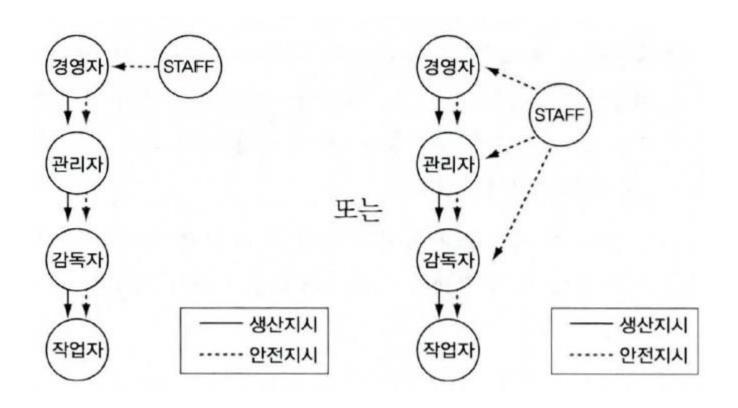
| 장점 | ① 안전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축적이 용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| 이하다.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② 경영자의 조언 및 자문역할           |
|    | ③ 안전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신속하다       |
| 단점 | ① 생산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필요         |
|    | ② 생산부분의 안전에 대한 무책임 • 무권한   |
|    | ③ 생산부서와 마찰이 일어나기 쉽다.       |
| 비고 | ① 중규모(100인~1,000인) 사업장에 적용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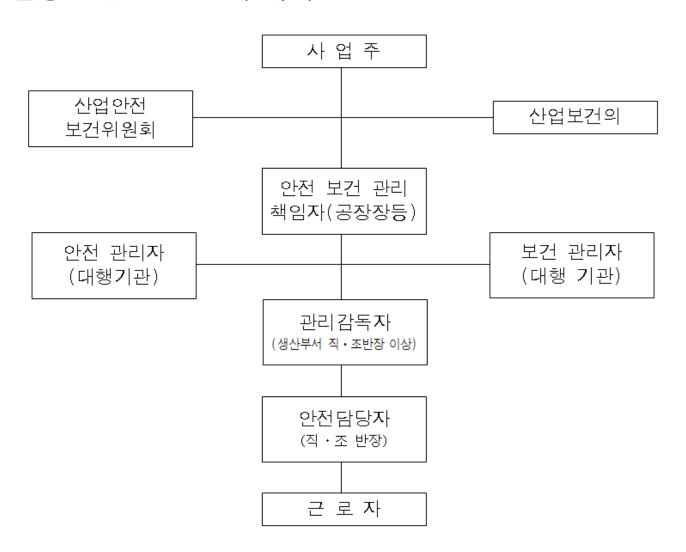
- 안전보건관리조직
  - 라인 스태프형(Line Staff) or 혼합형(\*\*)
    - ❖ 라인형과 스태프형의 장점을 취한 형태로서 스태프는 안전을 입안, 계획, 평가, 조사하고 라인을 통하여 생산기술, 안전대책이 전달되는 관리방식이다.

| 장점 | ① 안전지식 및 기술 축적 가능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| ② 안전지시 및 전달이 신속・정확하다             |
|    | ③ 안전에 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용이하다.     |
|    | ④ 안전활동이 생산과 분리되지 않으므로 운용이 쉽다     |
| 단점 | ① 명령계통과 지도•조언 및 권고적 참여가 혼동되기 쉽다. |
|    | ② 스태프의 힘이 커지면 라인이 무력해진다.         |
| 비고 | ① 대규모(1,000인 이상) 사업장에 적용         |

- 안전보건관리조직
  - 라인 스태프형(Line Staff) or 혼합형(\*\*)



-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등의 법적 체제
  - 법상 안전 보건 조직 체계



-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등의 법적 체제
  - 안전관리자의 선임
    - ❖ 상시 근로자 300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[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120 억원(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 억원)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]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.
    - ❖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 인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 로자로 본다. 다만,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 급사업의 공시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
    - ❖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 명 이내이어야 한다.
      - ▶ 같은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
      - ▶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 킬로미터 이내에 소재 하는 경우

-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등의 법적 체제
  - 안전관리자의 선임
    - ❖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지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 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.
    - ❖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 나 위탁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등의 법적 체제
  - 안전관리자의 선임 방법

| ① 토사석 광업 ② 서적, 잡지 및 기타<br>인쇄물 출판업, 음<br>악 및 기타 오디오<br>물 출판업, 인쇄 및<br>기록매체 복제업<br>③ 대부분의 제조업 | <ul> <li>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: 1명</li> <li>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: 2명</li> </ul>   |
|---|---|
| ① 운수업<br>② 통신업  | <ul><li>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,000명 미만 : 1명</li><li>상시 근로자 1,000명 이상 : 2명</li></ul>  |
| 건설업   | <ul> <li>공사금액 120억원(토목공사 150억원)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: 1명</li> <li>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: 2명(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됨)</li> </ul> |

-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등의 법적 체제
  - 안전관리자의 선임
    - ❖예제) 공사금액이 1500억 원인 건설 현장에서 두어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는?
    - ❖ 공사금액이 1500억 원이므로 공사금액 800억 원(2명) + 공사금액 700억 원(1명 추가) → 3명을 선임

-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등의 법적 체제
  -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
    - ❖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 ·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, 관리감독자에 게 조언-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
    - ❖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 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.
      - ➤ 제조업
      - ▶ 임업
      - ▶ 하수, 폐수 및 분뇨 처리업
      - ▶ 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
      - ▶ 환경 정화 및 복원업
    - ❖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.

-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등의 법적 체제
  -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
    - ❖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("관리책임자")를 두어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  - ❖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
      - ▶ 상시근로자 50명 이상
        - ✓ 토사석 광업
        - ✓ 식료품 제조업, 음료 제조업
        - ✓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; 가구 제외
        - ✓ 펄프,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
        - ✓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 제품 제 조업
        - ✓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; 의약품 제외
        - ✓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
        - ✓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
        - ✓ 비 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        - ✓ 1차금속제조업
        - ✓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; 기계 및 가구 제외
        - ✓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        - ✓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 조업
        - ✓ 전기장비 제조업

-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등의 법적 체제
  -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
    - ❖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
      - ▶ 상시근로자 50명 이상
        - ✓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        - ✓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        - ✓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
        - ✓ 가구제조업
        - ✓ 기타제품 제조업
        - ✓ 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
        - ✓ 해체, 선별 및 원료 재생업
        - ✓ 자동차 종합 수리업, 자동차 전문 수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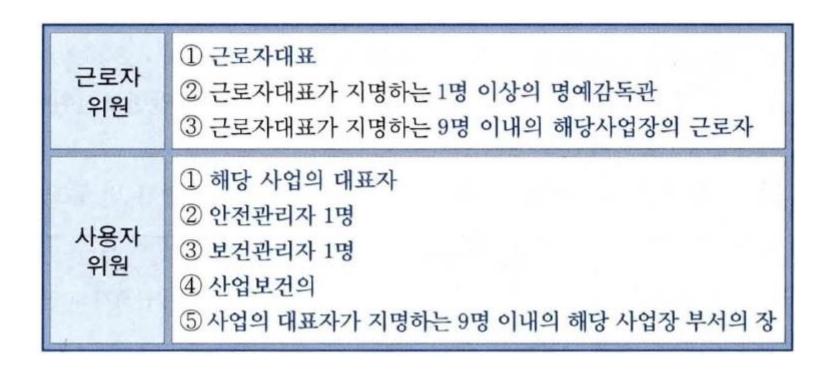
-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등의 법적 체제
  -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
    - ❖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
      - ▶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
        - ✓ 농업
        - ✓ 어업
        - ✓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        - ✓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
        - ✓ 정보서비스업
        - ✓ 금융 및 보험업
        - ✓ 임대업, 부동산제외
        - ✓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(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)
        - ✓ 사업지원 서비스업
        - ✓ 사회복지 서비스업
      - ▶ 공사금액 20 억원 이상
        - ✓ 건설업
      - ▶ 상시 근로자 100 명 이상
        - ✓ 나머지 사업

-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등의 법적 체제
  - 산업보건의의 선임 등
    - ❖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.
    - ❖ 다만,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 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.
  -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
    - ❖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 명 (선박 및 보 트 건조업,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 명) 이상인 사업
    - ❖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

-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등의 법적 체제
  - 안전보건조정자
    - ❖ "건설산업기본법"의 발주자로서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 공사가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자는 그 각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경우 그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.
      - ▶ "전기공사업법"에 따라 분리 발주하여야 하는 전기 공사
      - ▶ "정보통신공사업법"에 따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공사
    - ❖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발주자는 분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 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-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등의 법적 체제
  -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(\*\*)
    - ❖사업주는 산업 안전 ·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·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· 운 영하여야 한다.
    - ❖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· 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
      - ▶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.
        - ✓ 단,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, 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상
      - ▶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중 다른 업종에 비해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・위험 사업장
        - ✓ 토사석 광업
        - ✓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 제외)
        - ✓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, 의료용 화합물,생약 제제 제조업, 비누, 세정광 택제, 화장품 제조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 제외
        - ✓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        - ✓ 제1차 금속산업
        - ✓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
        - ✓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        - ✓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        - ✓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

-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등의 법적 체제
  -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(\*\*)
    - ❖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



-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등의 법적 체제
  -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
    - ❖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
      - ▶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     - ▶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     - ▶ 근로자의 안전 ·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      - ▶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     - ▶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      - ▶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      - ▶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
      - ▶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·보건조 치에 관한 사항

-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등의 법적 체제
  - 노사협의체
    - ❖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(\*\*)
      - ▶ 공사금액이 120 억원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.
    - ❖노사협의체의 구성(\*\*\*)
      - ▶ 근로자위원
        - ✓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
        - ✓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 명.
        - ✓ 다만,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근로자 1 명
        - ✓ 공사금액이 20 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
      - ▶ 사용자위원
        - ✓ 해당사업의 대표자
        - ✓ 안전관리자 1 명
        - ✓ 보건관리자 1명(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)
        - ✓ 공사금액이 20 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

-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등의 법적 체제
  - 노사협의체
    - ❖노사협의체의 운영 등
      - ▶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  - ❖ 노사협의체 협의사항
      - ▶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
      - ▶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
      - ▶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

-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등의 법적 체제
  - 도급사업시의 안전 · 보건조치
    - ❖ 안전 ·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
    - ❖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· 보건 관리
    - ❖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조언
    - ❖ 경보의 통일적 운용과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사항의 주지
    - ❖작업환경 측정

- 안전보건 조직의 안전직무
  - 사업주의안전직무
    - ❖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
    - ❖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
    - ❖해당 사업장의 안전 ·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
  -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
    - ❖작업의 중지 및 재개
    - ❖도급사업 시의 안전·보건 조치
    - ❖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·조정
    - ❖ 안전인증대상 기계 · 기구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· 기구 등의 사용 여부확인
    - ❖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

- 안전보건 조직의 안전직무
  -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
    - ❖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
    - ❖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   - ❖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
    - ❖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   - ❖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    - ❖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    - ❖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, 유지에 관한 사항
    - ❖ 안전 ·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를 구입할 때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
    - ❖ 기타 근로자의 유해 ·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

- 안전보건 조직의 안전직무
  - 안전관리자의 직무
    - ❖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직무와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 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
    - ❖ 방호장치,기계・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
    - ❖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
    - ❖사업장 순회점검・지도 및 조치의 건의
    - ❖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·조언
    - ❖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·관리를 위한 지도·조언(안전분야에 한한다)
    - ❖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
    - ❖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- 안전보건 조직의 안전직무
  -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
    - ❖ 안전 ·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· 지도
    - ❖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    - ❖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    - ❖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・지도
    - ❖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,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・지도
    - ❖산업안전·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

- 안전보건 조직의 안전직무
  - 관리감독자의 직무
    - ❖기계·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·보건 점검 빛 이상유무의 확인
    - ❖근로자의 작업복・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・사용에 관한 교육·지도
    - ❖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
    - ❖작업장 정리 · 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 · 감독
    - ❖산업보건의,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・조 언에 대한 협조
    - ❖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·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 의 개선조치의 시행
    - ❖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·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- 안전관리규정의 작성
  -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
    - ❖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 근로자 100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.
    - ❖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  - ❖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  - ❖ 안전관리규정의 포함사항(\*\*\*)
      - ▶ 안전 · 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
      - ▶ 안전 ·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      - ▶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     - ▶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      - ▶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      - ▶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
      - ▶ 그 밖에 안전·보건에 관한 사항

- 안전관리규정의 작성
  -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
    - ❖ 안전관리 규정 작성시 유의사항
      - ▶ 규정된 안전기준은 법적 기준을 상회하도록 작성 할 것
      - ▶ 관리자층의 직무와 권한 및 근로자에게 강제 또는 요청한 부분을 명확히 한다.
      - ▶ 관계 법령의 제정, 개정에 따라 즉시 개정한다.
      - ▶ 작성 또는 개정시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.
      - 규정내용을 정상시는 물론 이상시 즉, 사고 및 재해 발생 시의 조치에 관해서 도 규정한다.

- 안전보건 개선계획
  -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에 포함사항
    - ❖시설
    - ❖안전 보건 교육
    - ❖ 안전보건관리체제
    - ❖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- 안전보건 개선계획 작성대상 사업장(\*\*\*)
    - ❖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
    - ❖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
    - ❖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

- 1. 안전조치의 방법을 설명한 것 중 올바른 것은? (05.03.20)
  - ① 페일세이프(fail safe): 사람이 잘못 조작하여도 안전하게 되도록 하는 것
  - ② 백업 (backup) : 주요한 기능의 고장시에 그 기능을 대행하여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
  - ③ 풀 프루프(fool proof) : 기계 또는 장치의 고장 시에도 안전하게 동 작
  - ④ 페일 소프트(fail soft): 설비 또는 장치의 일부가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전체적인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

- 2. 다음은 사고연쇄이론에 관한 사항이다. 사고를 가져오기 전단계는? (05.03.20)
  - ① 사회 환경
  - ② 개인적 결함
  - ③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
  - ④ 상해

- 3. 다음의 안전관리 조직의 유형 중 참모식 조직의 특성이 아닌 것은? (05.03.20)
  - ① 모든 명령은 생산계통을 따라 이루어 진다.
  - ② 100 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합하다.
  - ③ 안전 업무가 전담 기능에 의거해 수행되므로 발전적이다.
  - ④ 라인식 조직보다 비경제적인 조직이며, 안전기술 축적이 용이하다.

- 4. 버드(Bird)의 재해발생에 관한 연쇄이론 중 징후는 몇 단계 에 해당하는가? (05.05.29)
  - ① 제 1단계
  - ② 제 2단계
  - ③ 제 3단계
  - ④ 제 4단계

- 5. 안전관리 조직의 기본 유형이 아닌 것은? (05.05.29)
  - 1 line system
  - ② staff system
  - 3 line-staff system
  - (4) safety system

- 6. 안전관리의 4M 가운데 Media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? (05.05.29)
  - ① 인간과 기계를 연결하는 매개체
  - ② 인간과 관리를 연결하는 매개체
  - ③ 기계와 관리를 연결하는 매개체
  - ④ 인간과 작업환경을 연결하는 매개체

- 7. 안전조직에서 line system의 단점 중 옳은 것은? (06.03.05)
  - ① 비 경제적 조직체제이다.
  - ② 안전관리부와 생산부간의 유기적 협조가 곤란하다.
  - ③ 안전조직원은 전문가이어야 한다.
  - ④ 대규모 기업에서 채택이 곤란하다.

- 8. 사고 방지 대책 제 5단계의 시정책의 적용에서 3E와 관계가 없는 것은? (06.03.05)
  - ① 교육(Education)
  - ② 기술(Engineering)
  - ③ 재정 (Economics)
  - ④ 독려 (Enforcement)

- 9. 하인리히 재해발생 5 단계 중 3 단계는? (06.03.05)
  - ① 불안전행위 또는 불안전상태
  - ②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
  - ③ 인적 결함
  - ④ 사고

- 10. 재해 사고발생 비율에 대하여 버드(Frank E. Bird)는 1:10:30:600 비율 이론을 주장하였다. 여기서 "30" 에 해당 하는 것 다음 중 어느 것인가? (06.03.05)
  - ① 중상
  - ② 경상
  - ③ 무상해, 무사고(위험순간)
  - ④ 무상해 사고 (물적 손실)

- 11. 우리나라에서 어떤 한 해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직접손실액(산재보상금 지급액)이 2조원으로 집계되었다. 하인리히의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을 적용해 볼 때 총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얼마인가? (06.05.14)
  - ① 4조원
  - ② 6조원
  - ③ 8조원
  - ④ 10조원

- 12. 다음 중 라인식 안전조직의 특성이 아닌 것은? (06.05.14)
  - ①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적용된다
  - ② 참모식 조직보다 경제적인 조직이다.
  - ③ 안전관리 전담 요원을 별도로 지정한다.
  - ④ 모든 명령은 생산 계통을 따라 이루어진다.

- 13. 중규모 사업장에 가장 적합한 안전조직은? (06.05.14)
  - ① 참모식 조직
  - ② 라인식 조직
  - ③ 위원회 조직
  - ④ 라인 및 참모 혼합식 조직

- 14. 하인리히의 1 : 29: 300의 원칙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을 가 장 적합하게 설명한 것은? (06.08.06)
  - ① 총 재해 330건에 치중해야 한다.
  - ② 29건의 경상의 재해를 제거해야 한다.
  - ③ 1건의 사망재해의 원인 제거에 치중해야 한다.
  - ④ 300건의 무상해 재해의 원인 제거에 치중해야 한다.

- 15. 다음 중 재해의 뜻으로 가장 옳은 것은? (06.08.06)
  - 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
  - ② 안전사고의 결과로 일어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말한다.
  - ③ 안전사고의 사건 그 자체를 말한다.
  - ④ 사고로 입은 인명의 상해만을 말한다.

- 16. 재해발생의 배후 요인에는 4M이 있다. 이 가운데 작업정보, 작업방법 등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? (07.03.04)
  - ① 관리 (Management)
  - ② 기계·설비 (Machine)
  - ③ 인간(Man)
  - ④ 매체 (Media)

- 17. 다음 중 사고예방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것은? (07.05.13)
  - ① 기술적 개선
  - ② 안전점검
  - ③ 경영층의 참여
  - ④ 안전관리자 임명

- 18.1,000 명 이상의 대규모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채택되고 있는 안전조직의 방식은? (07.05.13)
  - ① 라인 방식
  - ② 스텝 방식
  - ③ 라인-스탭 방식
  - ④ 인간-기계 방식

- 19.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? (07.05.13)
  - ① 안전 · 보건교육
  - ② 안전보건관리예산
  - ③ 안전 · 보건관리체계
  - ④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20.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잘못된 것은? (08.05.11)
  - ① 당해 사업의 대표자
  - ②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인 이상의 명예산업안전 감독관
  - ③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0 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
  - ④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 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

- 21. 버드(Frank Bird)의 도미노 이론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? (08.07.27)
  - ① 기본원인 → 제어의 부족 → 직접원인 → 사고 → 상해
  - ② 기본원인 → 직접원인 → 제어의 부족 → 사고 → 상해
  - ③ 제어의 부족 → 기본원인 → 직접원인 → 사고 → 상해
  - ④ 제어의 부족 → 직접원인 → 기본원인 → 상해 → 사고

- 22. 하인리히(Heinrich) 의 재해발생 구성 비율에서 중상해가 5 건 발생하였다면 무상해 사고는 몇 건 발생하겠는가? (09.03.01)
  - ① 900 건
  - ② 1500 건
  - ③ 1200 건
  - ④ 1800건

- 23.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를 충원하거나 해임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 (09.05.10)
  - ① 당해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동일업종 평균재해율의 3배인 경우
  - ② 작업환경불량, 화재,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  - ③ 중대재해가 연간 3건 발생한 경우
  - ④ 안전관리자가 질병의 이유로 6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- 24. 다음 중 라인 스텝(line staff) 조직의 단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? (09.05.10)
  - ① 권한의 분쟁이나 조정으로 인해 시간과 노력이 소모될 수 있다.
  - ② 명령계통과 조언 권고적 참여가 혼동되기 쉽다.
  - ③ 스텝의 월권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.
  - ④ 라인이 스텝에 의존 또는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.

- 25. 다음 중 안전관리에 있어 관리사이클(PDCA)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09.05.10)
  - ① 계획 (Plan)
  - ② 검토 (Check)
  - ③ 실시 (Do)
  - ④ 분석 (Analysis)

- 26. 재해예방대책의 기본원리 5 단계 중 제 4단계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10.03.07)
  - ① 기술적인 개선
  - ② 작업 배치의 조정
  - ③ 교육훈련의 개선
  - ④ 작업 분석 및 평가

- 27.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? (10.05.09)
  - ① 안전 ·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  - ②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 - ③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  - ④ 보호구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

- 28. 다음 중 재해발생에 관한 아담스의 이론으로 옳은 것은? (10.05.09)
  - ① 통제부족 → 기본적 원인 → 직접적 원인 → 사고 → 상해
  - ② 관리구조 → 작전적 에러 → 전술적 에러 → 사고 → 상해 · 손해
  - ③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→ 개인적 결함 →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→ 사고 → 상해
  - ④ 개인·환경적인 요인 → 불안전 행동 및 상태 → 에너지 및 위험물 의 예기치 못한 폭주 → 사고 → 구호

# Thank you